성주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성주군수

2. 개정이유

상수도 요금 인상(안)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상수도 시설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정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수도 요금 인상(안)에 따라 업종별/구경별 요금표 개정(별표 3)

나.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 정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서 "차상위 계층" 삭제(안 제35조제1항제6호)
- 18세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신설(안 제35조 제1항제10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의견없음(2016.3.23. ~ 4.12)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분석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2004년부터 동결된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상수도 시설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수도 요금감면 대상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수도 요금 인상(안)에 따라 원가 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율 (16%)을 2016년 10월 고지분부터 2018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목표 현실화율이 26%까지 상향되도록 상수도 요금을 인상시키고자 업종별/구경별 요금표[별표 3]를 개정하고, 상수도 요금 감면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서 차상위 계층을 삭제, 수급권자로 감면대상을 정비하고, ”18세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를 신설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현실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2014년 행정자치부 “지방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전국 및 경상북도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현실화율 개선을 통해 물의 과소비 방지와 군 재정 악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수도 시설 개선 및 투자를 통해 주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고,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고, 우리군의 출산정책 의지를 폭넓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를 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공요금 물가 상승으로 현실생활에서 느끼는 체감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과 적극적인 대주민 홍보를 병행하여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